

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

[] 동물생산업

[] 동물수입업

[] 동물판매업

[] 동물장묘업

허가증 재발급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 성명	
	주소 (전화번호:)			
영업장	명칭(상호)			
	주소	(전화번호:)		
	신청업종	[] 동물생산업 [] 동물수입업 [] 동물장묘업 [] 동물판매업(일반, 알선·중개, 경매 알선·중개)		
재발급 사유				
허가증 분실사유	※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		

「동물보호법」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동물생산업, [] 동물수입업, [] 동물판매업, [] 동물장묘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허가증(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 5천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처리절차

